

2020년도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2019. 12. 2.



목 차

I. 일반 현황

1. 사업 개요	4
2. 공고 개요	7
3. 추진 일정	7

II. 2020년도 신규 지원계획

[중점분야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9
--	---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13
2. 신청방법	20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 선정	26
2. 연구사업 관리	28

[첨부1]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37
--------------------------	----

[첨부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38
------------------------	----

2020년도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I . 일반 현황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배경 》

-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수립(‘16.4, 국과심)
 -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선정(‘16.5, 다부처특위)
 - “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신종 감염병 극복을 위한 R&D 지원 확대
 - * 국가방역체계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사업 공동기획 추진
 - 국정과제 45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복지부)
 - * (45-6-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감염병 현장 대응기술 개발

① 추진목적

- 신·변종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에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범부처 R&D 협력사업 추진

② 기본방침

- (범부처) 7개 부처가 공동 투자^{*}하여 범부처 사업단 형태로 추진
 - * 복지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18~’22년 총 400억
- (공익재단법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은 공익재단법인으로 설립^{*}, 독립된 법적 지위 부여
 - * (사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다부처가 공동 투자하고 특정기관에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
- (방역연계)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방역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성과는 방역현장에 적용

3 주요내용



④ 추진목표

비전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실현

추진
목표

- ▷ [대비] 감시망 및 예측모델 구축으로 감염병 사전 대비 능력 확보
 - * 선진국 수준의 국가 감시시스템 구축
- ▷ [대응] 감염병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보호,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 * 감염병 신속진단 및 방제방역 효율화
- ▷ [소통] 감염병 위기시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 * 대국민 신뢰도 회복 및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중점 추진 과제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 연구(유입차단)

- ① ▶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 ▶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 및 방제 연구
- ▶ 백신 이상반응 연구 및 안정성, 유효성 품질평가 기술 개발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연구(현장대응)

- ② ▶ 다중 감염성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 ▶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감염병 소통체계 구축 연구(확산방지)

- ③ ▶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 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연구
- ▶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

공고 개요

RFP 명	당해연도 지원규모	총 지원기간	지원 대상	과제구성 권장사항
7-3. ICT 기술 활용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개선 연구	11억 원	2020 ~ 2021 (2년)	산·학·연·병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 참여

※ 단독과제 또는 총괄과제(세부과제 구성)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규모는 계획된 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 과제 신청 마감시간 엄수(2019. 12. 31.(화) 오후 2시 이후 연장 불가)

※ 지원분야별 평가일정 등 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19. 12. 02.(월)	사업 공고
○ '19. 12. 31.(화)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 14:00 까지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마감(17:00 까지)
○ '20. 01. 02.(목) ~ 01. 03.(금)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20. 01. 06.(월)	구두평가 일정 안내 및 경쟁률 공지
○ '20. 01. 10.(금)	구두평가 실시
○ '20. 01. 15.(수) ~ 01. 21(화)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 '20. 01. 23.(목)	최종선정공고
○ '20. 01. 31.(금)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도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II. 2020년도 신규 지원계획

[중점분야7]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기술개발의 필요성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감시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격리 대상자의 증가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 '15년 메르스 국내 유행시 접촉자 중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 주거 방문 및 전화를 통한 모니터링을 시행, 향후 대규모 접촉자 발생시 소규모 인력으로 대응에 한계
- ICT 기반 격리 대상자의 증가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후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 실용화 추진

□ 기술개발 목표

RFP 명	연구목표	연구기간
7-1.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과 접촉 양상 조사 연구	7-1-1.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 방법 개발	'18년~'19년
	7-1-2. 감염병 전파 확산 모형 개발	'18년~'19년
7-2.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기술 개발	○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검정 가능 prototype 제품 개발	'19년
7-3. ICT 기술 활용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개선 연구	○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 개발 1건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서버구축) ○ 접촉패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모형 개발 각 1건	'20년~'21년

□ 연차별 예산(안)

(단위 : 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	-	11	10	-	21

※ 지원 규모는 계획된 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RFP 7-3] ICT 기술 활용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 및 개선 연구(안)

사업명	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제명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18	'19	'20	'21	'22	합계
	-	-	11억 원	10억 원	-	21억 원

※ 상기 금액은 계획된 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목적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 격리 대상자 및 접촉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감염병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상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최적 시스템 구축

▶ 연구목표

1.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2. 신종감염병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자 관리방법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용도 제고방안 마련
3. 접촉 데이터, 접촉 매트릭스 구축 및 감염병 전파 확산 모형 개발

※ 2018~2019년도에 사업단의 선행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및 연구결과 활용

▶ 지원분야 및 내용

1-1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범운영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

- 시범운영을 위한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 연령(노인, 아동, 성인대상 등), 직업(의료인, 비의료인 등), 증증도(치사율이 높은 감염병과 낮은 감염병 등), 전파경로(호흡기감염병, 접촉감염병 등), 확산속도(감염전파력이 높거나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 시범사업의 규모, 절차 등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효율성, 운용성 확인
- 시범사업의 적절성 및 결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 기존 접촉자 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1-2 다양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범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

- 지자체(지역보건소)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 개발
 - * 기 개발된 연구 사업(7-1, 7-2과제) 기반으로 최적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서버 구축
 - * 대상 지역 보건소는 5개 시·도, 10개 보건소 이상
(메르스 확진환자의 접촉자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보건소 우선 선정)
 - * 신종감염병 또는 감염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경험자들의 격리 경험 포함
- 개발된 시나리오를 이용한 다양한 격리대상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 접촉자 관리서버 구축 및 관련부처 검토 등을 통한 실효성 검증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개선 필요분야 도출 및 후속 개선연구 수행을 통해 최종 시스템 구축
- 현장 대응요원 활용을 고려 장비사용 매뉴얼(프로토콜) 및 유지보수 방안 제시

2. 신종감염병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자 관리방법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용도 제고방안 연구

- 인식도 및 수용도에 대한 조사 연구
 - * 자가격리자 대상인 국민, 관리 주체인 지자체, 접촉자관리와 관련된 유관 부처 대상
 - *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 등
-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 제약* 및 장벽 등에 대한 조사
 - *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학교보건법 등 실제 격리되었을 경우 직장 및 학교 등 여러 제약점에 대한 실제적 사항
 - * 유사기기 활용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시스템 활용 방안 마련
- 개발된 기기를 사용 및 생체 정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3자 제공 가능성 검토

3. 접촉 데이터, 접촉 매트릭스 구축 및 감염병 확산 모형 개발

- 기 개발된 설문지¹⁾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접촉 양상 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구축
 - * 신변종 등 감염병 특성에 맞게 전파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일상접촉과 밀접접촉 별 유형에 따라 분석
 - *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위험정도 등 관련 변수별 접촉행렬 개발
- 1) 감염병 전파 모형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설문지 활용(7-1-2과제 '18~'19년 수행)
- 접촉 패턴에 따른 감염병 전파 확산 모형 개발
 - * 성별, 연령별, 고위험군 혹은 고위험 지역, 의료환경 등을 고려한 감염병 확산 모형 개발
- 감염병 확산모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접촉자 관리 방법과 중재 전략 제안
 - * 향후 주기적인 접촉설문을 시행하여 다양한 수준의 접촉 행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 접촉 설문과 이를 이용한 감염병 모형 구축을 통해 향후 수정, 보완해야 할 접촉 데이터 제안

▶ 지원대상

-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 (기업참여 필)

▶ 특기사항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물은 일선 보건소에서 실질적 활용이 가능해야함
 - *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양적 질적 지표를 객관적으로 제시:
- 과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지원함.
- 선행과제에서 추진한 연구결과 제공(위탁 또는 공동연구 형식으로 참여가능)

RFP 명	연구목표	연구기간
7-1.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과 접촉 양상 조사 연구	7-1-1.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	'18년~'19년
	7-1-2. 감염병 전파 확산 모형 개발	'18년~'19년
7-2.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기술 개발	○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검정 가능 prototype 제품 개발	'19년

2020년도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III. 신청요건 및 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구성 요건 및 가산점 부여

- 각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 가능)
 - ※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임상시험, 통계분석 등)을 용역 받아 수행하는 과제임. 위탁연구기관은 추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없음

3. 참여 및 신청 제한

연구개시 예정일 : 2020년 1월 말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 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 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연구 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잔여연구기간의 인정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4.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9대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국가 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13항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rpms.kisti.re.kr , 042-869-1895)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p://sims.ntis.go.kr , 02-3287-4354)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nrms.kisti.re.kr , 042-869-1665)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http://nfec.ntis.go.kr , 042-865-397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 042-865-3481)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 명 자 원 *	생명 정보 (정보)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품종**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 1800-5455)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 043-931-5320)	
기탁	생 명 자 원 *	생물 자원 (실물)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www.kbn.cdc.go.kr , 043-719-6525)	인체 구성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역학정보, 임상정보, 유전정보 등의 정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www.nccp.cdc.go.kr , 043-719-6670)	병원체자원 (사람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원충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www.nifds.go.kr , 043-719-5507)	실험동물자원 (전자 조작 등을 통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실험동물)
		신품종**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chembank.org , 042-860-7190)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
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 등록대상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s://cris.nih.go.kr>)에 지원과 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CRIS) 등록문의 : 043-719-8662 / criskorea@korea.kr
- 성과보고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SP)에 국가대표등록 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시점 :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 등록권한 :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 임상연구정보 갱신 :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5.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 기관, 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13년 2월 시행)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 (법 적용범위 확대) 기존 생명과학기술로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적용범위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체로 확대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동법 제2조제12호)
 -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동법 제2조제11호)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 심의 대상
 - *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美 연방법 HIPPA, 연방규정 45CFR46 등)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준수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http://irb.or.kr> (irbqna@nibp.kr)

6. 연구시설 · 장비 도입 및 관리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할 경우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함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 · 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
 -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를 통해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 심의대상인 연구시설 · 장비가 심의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구축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외)
 - 선정 이후 연도부터는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 · 장비심의평가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본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5~7월 예정)
 - ※ 매칭펀드가 포함되어 1억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하려는 경우,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연구시설 · 장비는 심의대상임
 - ※ 5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축할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조
- 연구시설 ·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도입(변경 · 취소) 심의 대상일 경우 사업 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향후 국가연구 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부출연금으로 구입한 국가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1. 과제신청 전 숙지 사항

- 연구자는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와 「공고안내서의 III. 신고요건 및 방법과 IV. 평가방법 및 관리」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사업별(RFP) 지원자격, 연구비 규모 및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 확인 요망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 이후 지원 분야, 연구계획서 본문 등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신청완료 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 제출) 마감까지 지원 분야 및 연구계획서 본문을 제외한 제출서류(예: 증빙서류 등)를 보완 하여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모두 신청(인증) 완료해야 함

※ 연구자가 신청한 정보를 연구자 신청 마감기간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043-901-1204, 1205)로 요청해야 함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를 준수하여야 함
 - 예비선정 대상과제 공고 시 주관 및 세부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를 점검하며 참여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는 과제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사업단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 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전문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 ②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2.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서식’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홈페이지 [사업참여]>사업공고 또는 [자료실]>법규/서식>관련서식
 -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구두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 ※ 연구계획서의 본문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제한

3. 연구비 산정

□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될 수 있음

□ 참여기업부담금

- ※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p>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 단,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 본부과제와 사업단 세부과제를 각각 별도의 개별과제로 인정한다.</p>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p> <p>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p>	<p>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p>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비 고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따른 기업을 말함
-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전산입력 안내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에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과제신청은 로그인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전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제신청 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 변경사항 존재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업데이트 요망

○ 신청절차

- 1단계 : 과제명, 세부과제구성, 요약문, 연구자 인적사항,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연구비 등 전산입력 사항 입력
- 2단계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3단계 : 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4단계 : 주관연구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과제신청(전산입력)시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각 세부과제 신청 완료 후 총괄과제에서 “신청완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총괄과제가 신청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신청 완료가 불가능 합니다.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시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전산접속으로 인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나 신청자분들께서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한

※ 신청마감시간

- 과제 신청 마감 : 2019. 12. 31(화), 14:00 까지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마감 : 2019. 12. 31(화) 17:00 까지

* 마감시간 엄수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0년도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IV.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 선정

1. 사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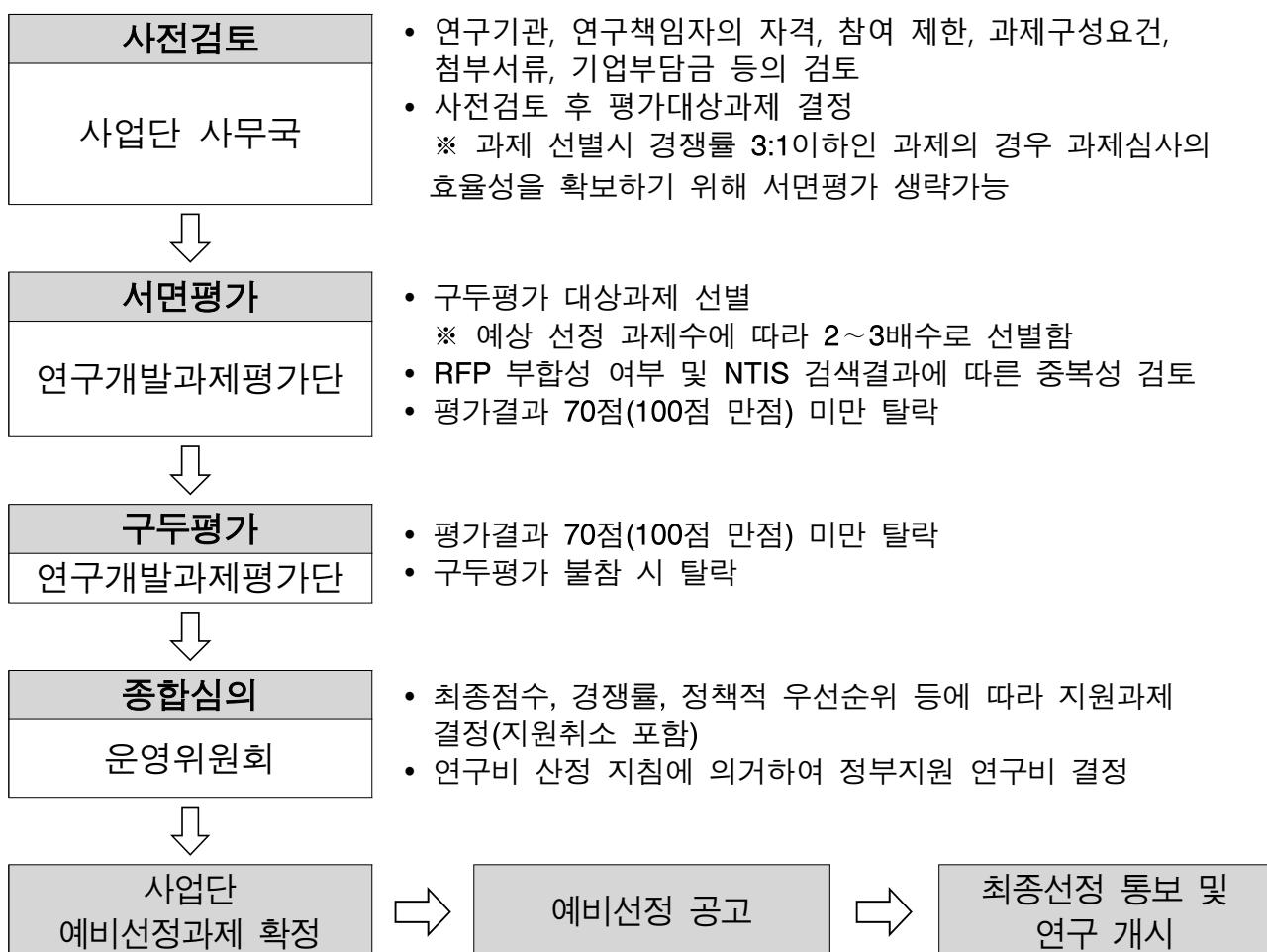
○ 사업단 사전검토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율 계상, 과제 구성요건,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업부담금 등의 검토

2. 단계별 평가절차

○ 서면평가 ⇒ 구두평가 ⇒ 종합심의

3. 평가절차



* 예비선정공고 기간 실시내용

- 중복대상으로 이의제기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과제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
- 해당 첨부서류 미제출자는 탈락처리

4. 평가방법 및 점수 계산방식

$$\circ (\text{서면평가 점수} \times 0.3) + (\text{구두평가 점수} \times 0.7)$$

-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연구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다만,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 과제 선별시 경쟁률 3:1이하인 과제의 경우 과제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구두평가로 대체

5. 주요 평가항목

서면평가	구두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P 이해도• 연구추진 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마일스톤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전문성 및 전문분야 구성의 적절성• 최종 연구 목표의 명확성 및 연차별 목표의 타당 (다년도과제의 단계별 목표의 도전성 및 적절성)• 연구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및 우수성• 성과지표의 우수성 (양적, 질적 지표)• 연구개발 성과의 방역현장에서의 활용·확산 가능성

1. 총괄

□ 사업단은 과제 선정평가,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를 통해 과제를 관리, 본 사업의 특성인 방역현장 연계를 위해서는 수동적인 사후평가 보다는 능동적인 지원체계 마련

○ 관리체계

- 연구시작단계부터 수행기간 동안 연구자간 협업, 상시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마일스톤 관리, 단계별 filtering 시스템 운영

분류	주요 검토내용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결과물의 방역현장에서의 적용·활용 가능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과 우수성, 구성의 적절성 • 연구계획의 타당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진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도, 연구수행 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 방역현장에서의 수요 및 부처의 의견 수렴
연차 및 단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서의 목표달성도 • 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 조기종료/중단 가능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물의 방역현장 활용성 • 과제목표달성 성공 및 실패 원인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에 반영
추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종료 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 • 제품개발, 특허,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연구성과 창출 정도

2.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 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3. 중간평가

□ 연차/단계 실적 · 계획의 평가

- 모든 과제는 「연차실적 · 계획서」 (and/or) 구두평가를 통해 매년 평가
 - 사업단장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상기 연차실적계획서를 평가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지원 연구비를 확정
- 사업단은 연구책임자와 방역당국의 해당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 워크샵(월 1회)을 개최하여 향후 연구개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장방문

- 사업단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다만,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표 달성 시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행정제재 및 감점여부 결정

-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방역연계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5.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 제정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수행관련 정보 ·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 시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안보 · 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위반 시 조치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 ·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함

6. 연구노트 관리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준수

- 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자체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을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함
-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소속기관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름
 -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그 외 연구노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7.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 연구성과 활용 현황의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시 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등록증 사본, 기타 시제품, 제품화 등)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성과의 홍보

- 사업단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연구발표회 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함
 - ※ 대중매체를 통한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비 지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연구결과를 국내·외(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수시 입력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의 공익기능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사업단의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보고사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영리기관 중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 ※ 실용화 : 개발연구단계 과제 중 기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과제임
 - ※ RFP 표기된 과제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는 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됨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정부 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사업단의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전문기관 납부비율

영리기업 유형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납부 비율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납부 비율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 ※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
- ※ 납부비율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을 따름
- * 매출액 산정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에 따르며, 경상기술료의 누적 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지 않음

○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납부기간 및 감면사항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 또는 약속 어음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납부기간 및 증빙자료의 제출 기간
 - 착수기본료는 경상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까지로 함
 - 영리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지침에 명시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통보한 경상기술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방역연계법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평가관리팀
 - 김신영 연구원(043-901-1205, sykim@gfid.or.kr)
 - 전경수 연구원(043-901-1204, jks1020@gfid.or.kr)

첨부 1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신규 개설한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전용 특약계좌 사본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 • 특약계좌 개설 확인서 (세부·위탁기관이 영리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 세부·위탁기관 중 영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약계좌 개설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함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협약체결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th>정의</th></tr> </thead> <tbody> <tr> <td>내부 인건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d></tr> <tr> <td>외부 인건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td></tr> <tr> <td>연구 지원인력 인건비</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td></tr> </tbody> </table>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th>세 부 산 정 내 용</th></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td></tr> <tr> <td>기타기관</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td></tr> </tbody> </table>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기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1]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급여총액(기타기관의 경우 급여기준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퇴직급여총당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실제 근무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해야함)인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계상 가능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 인 경우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집행 불가</p> <p>나.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끊어서 사용할 수 있음</p> <p>다. 대학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되며, 단과대 또는 학과단위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p> <p>라. 출연(연)등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전담지원인력에 대해서 직접비의 연구지원인건비를 집행 할 수 있음</p> <p>마. 겸직 또는 겸무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없고, 간접비의 지원인력인건비와 직접비의 연구지원 인건비를 중복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p>

【참고사항】

-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현금부담금 감면 연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소속 청년인력 포함)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 인력 미채용, 참여율 감소 등의 사유로 원래계획보다 감액한 금액은 반납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을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현금·현물)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 또는 인건비 집행액(현금·현물)이 민간 현금부담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회수)
-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
-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협약변경 처리기준」 별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해당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출연(연)·특정(연)·전문(연)에서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계상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td> <td>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p>※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p> </td></tr> <tr> <td></td> <td>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td></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p>※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p>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구분	세부내용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p>※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p>							
	<p>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합(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p>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p>※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p>【참고사항】</p> <p>○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p>			
직접비 [3] 연구 시설 · 장비비		<p>【사용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2. 연구시설·장비 임차·유지보수·이전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시설·장비 개발경비 :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 시설·장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p>【계상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 <p>* 사용용도 제2호에 한하여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연구 시설 · 장비비	<p>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 집행·관리</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이상 1억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전문기관) 심의 진행 ※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 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 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를 구비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 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 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 <p>○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p>※ 새로 구입 또는 변경 구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및 연구비 집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종료 2개월 이내 도입(검수·설치포함) 완료)</p> <p>-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당해연도에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 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함</p> <p>※ 다음연도 이월 구매시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연구비 집행은 다음연도 연구기간에 이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이월 구매 불가)</p> <p>○ 현물 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취득원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잔여내용 연수가 당해연도 연구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p>【사용용도】</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4] 연구 활동비	<p>1. 여비 : 국내외 출장여비</p> <p>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p> <p>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p> <p>*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p> <p>** 기술도입비는 연구계획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 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정액기술료(착수기본금, 선급금 등)에 한하여, 경상기술료는 제외) <p>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p> <p>*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p> <p>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6. 특허정보 조사비 등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p> <p>7. 연구과제 운영경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및 비영</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4] 연구 활동비	<p>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p> <p>8. 기기 및 SW구입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함)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p> <p>9.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관리 추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p> <p>【계상기준】</p> <p>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됨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p> <p>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본 지침 「9.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 ※ 5%초과 계상 가능하나 5%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4.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p> <p>5.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당해연도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p> <p>6.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p>
	[5] 연구 재료비	<p>【사용용도】</p> <p>1. 재료비 · 전산처리비 : 시약(試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p> <p>2. 시작품제작비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p> <p>【계상기준】</p> <p>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2.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p> <p>3.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p>현금 계상</p> <p>4.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p> <p>*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판매중인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⑥ 연구 수당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연구자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⑦ 위탁 연구 개발비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복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보고 ○ 위탁연구기관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또한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세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비 반납에 관한 책임을 가짐
간접비 [8]	간접비 [8]	<p>【사용용도】</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차(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8] 간접비	간접비	<p>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과전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계상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p>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p>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p>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에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